

서울고등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20728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9. 5. 23 선고 2018나20728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53497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이교범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임훈택, 한승엽

변론 종결2019. 5. 2.

판결 선고2019. 5. 23.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합53497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61,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답 267m² 중 100/267 지분에 관하여 2018.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의 "2018. 10. 13.자"를 "2018. 10. 19.자"로 고치고,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2018. 10. 1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는 합의가 체결되었고, 이행시기 등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교섭 또는 협의 과정에서 매매금액 자체에 관한 의견일치는 이루어졌지만,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 기타 조건에 관한 의견이 대립하던 중 피고 측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문제 삼아 2018. 10. 19.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초안대로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2018. 10. 19.자 청약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행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이행시기가 매매대금과 연동되어 이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매매대금에 관한 의견일치만으로 매매계약 성립을 인정함은 옳지 않다).

재판장판사김재호

판사이혁

판사조은래